

(한국유가공협회 공고 2019 - 3호 : 2019년 1월 2일)

제6차년도 한·호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정 및 추천세부요령

1. 근 거

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-174호)

2. 품목 및 물량

- 치즈류 : 5,367톤
- 조제분유 : 545톤

3. 품목별 적용 HSK 세번

○ 치즈류

0406.10.1010, 0406.10.1020, 0406.10.1090, 0406.20.0000, 0406.30.0000

0406.90.1000, 0406.90.2000, 0406.90.3000, 0406.90.4000, 0406.90.9000

- 단, 0406.90.1000은 이행 13년차부터 0406.10.1010, 0406.10.1020, 0406.10.1090, 0406.30.0000은 이행 18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(무관세 적용)

○ 조제분유

1901.10.1010, 1901.10.1090

- 단, 1901.10.1010은 13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(무관세 적용)

4. 적용기간 : 2019년 1월1일 ~ 2019년 12월31일 까지

5. 적용세율 : 0%

6. 배정 및 추천대상자 : 과거 수입자 및 신규수입자 등 실수요업체

- 본회 공고일 현재 “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”
(구.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)을 득 한자에 한함

7. 신청, 배정, 추천 제외대상 :

- 본회 공고일 이후 “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” (구.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)을 득 한 업체
- 제5차년도 한·호FTA 관세할당 배분물량 반납 없이 배정물량 이행률 95% 이하인 업체
- 과거 2년간(2017~2018년) 치즈 수입실적 중 FTA로 인해 배정받은 물량만 수입한 업체 (해당품목 : 치즈)
- 과거 2년간(2017~2018년) 치즈 수입물량 중 관세를 납부한 물량이 30%미만인 업체 (해당품목 : 치즈)

8. 신청기간 : 2019. 1. 2 ~ 1. 11 (2주간)

9. 배정 및 추천대행기관 : (사)한국유가공협회

10. 배정기준

전체물량의 90%와 10%를 각각 기존업체와 신규업체에 배정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기존업체 : 과거 2년간(2017~2018) 해당품목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· 신규업체 : 과거 2년간(2017~2018) 해당품목의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가. 기존업체 배정

-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90%는 기존업체에 1월중 일괄 배정
 - 신청물량은 전년실적 대비 최대 2배만 신청가능
 - 과거 2년간(2017~2018) 대 세계 수입실적 90%와 당해 연도 신청물량 10%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. 단, 필요시 최소량을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.
 - 배정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납물량에 포함하여 배정

나. 신규업체 배정

-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10%는 신규업체에 1월중 일괄·균등 배정
 - 업체당 배정물량은 기존업체에 대한 최소 배정량을 초과할 수 없음
 - 배정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업체에 재배정

다. 반납물량 및 미소진 예상량 재배정

- 1월~6월 : 기존방식 적용
 - 배정대상 : 누락된 기존업체 및 신규업체 배정
(본회 공고일 현재 “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”을 득한자에 한함)
- 7월~12월 : 선착순 배정
 - 배정대상 : 신규업체 및 배정물량 소진 기존업체
(단, B/L, 인보이스 등 수입서류 증빙서류 제출 필수)
 - 배정방법 : 동일 일자에 신청한 물량이 재배정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신청물량 비율로 배정

라. 상한선제한

- 물량의 적정배정을 위하여 업체당 배정 상한물량을 전체물량의 20% 이내로 한다

11. 추천 대상 원산지 : 호주

12. 추천서 교부

-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(제2016-174호)에 의거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·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 물량 적용 추천서를 교부 한다

13. 추천서 유효기간

-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것으로 본다

14. 신청서류

○ 관세할당 물량 배정 신청 시

- (1) 유제품 관세할당물량 배정 희망량 신청서 1부(별지 1)
- (2) 과거 2년간 수입실적 증빙서류
 -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부하는 “납세의무자용 신고건별 수입실적 증명서”
(추천대상HS코드, 관세, 부가세 항목 선택)
- (3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(4)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
(구.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) 사본 1부

○ 관세할당 물량 배정 후 할당물량 추천 신청 시

- (1) 한·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(별지 2)
- (2) 선하증권 사본1부
- (3) 상업송장 사본 1부
- (4)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(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)
- (5) 원산지 관련 서류 1부

15. 이행율 촉진을 위한 조치사항

- 관세율 할당물량의 완전한 사용촉진 (수입이행률 95%이상)을 위하여 배정 받은 업체에서 미 이행이 예상되는 쿼터량은 사전 적용기간 종료 2개월 전(2019년 10월 31일)까지 반납하여야 한다
- 이행률 촉진을 위하여 배정받은 업체에서 적용 종료 2개월 전 (2019년 10월 31일)까지 반납 없이 관세할당 배정물량의 이행률이 95% 이하일 경우 차기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
- 기타 이행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입권을 배정받은 자에게 이행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

16.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

- 신청서 교부 : (사)한국유가공협회 홈페이지(www.koreadia.or.kr)에서 다운로드
- 접수처 : (사)한국유가공협회
 - 신청방법 : E-mail (jms@koreadia.or.kr)담당 조민상 주임 접수
 - 신청서 접수 시 이메일 제목에
“제6차년도 한·호 FTA 신청서 000업체명” 반드시 명기
 -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접수 확인전화 요망
- 문의사항 : (사) 한국유가공협회 한·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 물량 담당 (전화 : 02-584-3631)

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장

(별지 1)

2019년 제6차년도 한·호 FTA 관세 할당물량 배정 희망량 신청서

1. 회사명 :

2. 부서명 및 담당 :

3. 전 화 :

4. Fax :

5. E-mail :

6. 용 도 : 일반내수용

7. 품목 및 HSK

- 치즈류 : 0406.10.1010, 0406.10.1020, 0406.10.1090, 0406.20.0000, 0406.30.0000
0406.90.1000, 0406.90.2000, 0406.90.3000, 0406.90.4000, 0406.90.9000
- 조제분유 : 1901.10.1010, 1901.10.1090

8. 신청량 : 치즈류 : _____ 톤 / 조제분유 : _____ 톤

9. 수입실적 (단위 : 톤)

구 분	치즈류		조제분유
	관세(a)	무관세(b)	
2017년			
소계(a+b)			
2018년			
소계(a+b)			
합 계			

* 수입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

-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부하는 “납세의무자용 수입실적 증명서” (추천대상HS코드, 관세, 부가세 항목 선택)

※ 주 : 1.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
2.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(구.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) 1부

3. 2017~2018년 수입 실적 근거서류 1부 끝.

위 사항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회 사 명 :

(대표이사 직인)

(별지 2)

접수번호 :							처 리 기 간
							2 일
한·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							
구 분	신 청 인 (납세의무자)			수 입 자			
상 호							
주 소							
대표성명							
사업자등록 번호							
전화번호	(휴대전화 :)			(휴대전화 :)			
팩스번호							
○ 신청내용							
세번부호 (HS)	품 명	수 량	금 액	수입국	수입예 정 자	용 도	
<p>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-174호에 의거 한·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 청 인 (인)</p> <p>한국유가공협회장 귀하</p>							